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6월 29일 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4년 7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공무원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9조)
 - 2) 지방공무원이 국외과건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과건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3)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호)
 - 4)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대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94. 5. 16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에 맞추어 1985. 5. 1 제정된 우리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
----------	-----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
- 나. 지방공무원이 국외과건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과건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 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 제4호)
-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대

통령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중 “연누계 2월”을 “연누계 60일”로 하고, 단서중 “6월”은 “180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9조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9 조 (파견근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 9 조 (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 (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병가) ①	연누계 60일	180일
제23조 (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별표 3>

慶弔事別休暇日數表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현	행 개 정 안	
결 혼	본 인	본 인	7
	자 녀	자 녀	1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배우자(처)	1
사 망	배우자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자 녀	3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백숙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배우자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